

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

(이재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134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	2020.11.24.
발 의 자	이재운, 김종두, 이흥희, 심재수, 박수자, 김향란, 권재경, 표주숙, 신재화, 최정환, 권순모 의원

1. 제정이유

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,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책무(안 제3조)

- 1) 군수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
- 2) 마을대표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

다. 지원대상(안 제4조)

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

라. 지원기간(안 제5조)

- 1) 상반기(4월~6월), 하반기(9월~11월) 기간 중 시행
- 2) 재배품목,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 변경 가능

마. 지원범위(안 제6조)

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
바. 사업신청 및 지원결정(안 제7조 ~ 안 제8조)

사. 완료보고 및 지도감독(안 제9조 ~ 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, 제4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농업기술센터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0. 11. 25. ~ 11. 30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3) 비용추계서 : 붙임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,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(이하 “마을공동급식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마을대표(마을의 이장,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마을공동급식을 가급적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.

제5조(지원기간)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(4월~6월), 하반기(9월~11월)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,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범위)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사업신청)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2.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(별지 제2호서식)

제8조(지원 결정)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을 선정,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, 이를 마을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9조(완료보고)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경우 마을공동급식 일지, 공동급식 사진, 사업비집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

1. 신청인(마을대표)

가. 성명: (생년월일:)

나. 주소: (연락처:)

2. 마을 현황

마을명	거주현황		공동급식 참여 인원					
	농가(호)	인원	계	시설원예	과수	수도작	축산	그 밖에
			명					

○ 참여비율: 퍼센트(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)

3. 급식계획

가. 급식장소: (위 치:)

나. 조리인력 성명: (연락처:)

4. 총 사업비: 천원

가. 조리인력 인건비: 천원

나. 식재료 구입비: 천원

다. 그 밖의 경비: 천원

붙임 1. 사업계획서 1부.

2.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참여자 명단 1부.

위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(마을 대표): (인)

거창군수 귀하

[붙임]

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계획서

1. 사 업 명:

2. 사업기간: 20 ~ 20

가. 급식지원기준일수 : 일

나. 급식기간: 일부터 일까지(일)

3. 사 업 자

○ 마을대표 성명: 전화번호:

4. 식재료 수급계획

조리원 성명	급식기간	식재료 구입 계획				
		계	육고기	생선류	채소류	그 밖에
		kg	kg	kg	kg	kg
		kg	kg	kg	kg	kg

5. 조리인력 인적사항

성 명	주 소	연 락 처	계 좌 번 호

6. 사업비 내역

구 분	세 부 내 용
인건비	천원(원/일 × 일)
식재료 구입비	천원(구입품목:)

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,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비용발생 요인

- 마을공동급식 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

3. 관련 조문

- 안 제6조(지원범위)
 -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조리인력 인건비, 식재료 구입비, 가스비 등
- 나. 추계의 전제 : 2020년도 지원 사업비 기준 추정
- 다. 추 계 결 과 : 2021 ~ 2025년(5년간)사이 세출 20억원 정도 소요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억(5%), 시군 19억(95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
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	2,013,000	380,600	391,600	402,600	413,600	424,600